

세종문화회관 팀별 비공개 대상정보

(2021.12.31.)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사장직속	감사실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감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 감사계획	제5호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공직기강 점검계획	제5호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 (지도)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청렴시책 관련 업무	· (개인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	제5호 제6호	내부직원에 관한 조사보고서로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 조사업무가 위축되어 공정한 조사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성명 등 익명 처리시에도 해당 대상자를 유추함으로써 사생활 침해가 초래될 수 있음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제5호	공개 시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내용	제5호 제6호	공개할 경우 제보자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제5호 제6호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및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 감사(조사) 중 관계자 등이 제출한 경위서, 문답서	제5호	공개 시 진술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어, 향후 동종의 진상조사시 진술 청취 및 문서 제출 등의 협조를 받기 어렵게 되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제5호 제6호	공개 시 피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커뮤니케이션팀	회관 종합 홍보마케팅	· 확정 전 업무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5호	미확정된 사안의 공개 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운영업체 선정 관련 위원회 구성 등 개인의 신상 정보에 관한 사항 (단, 선정 후에는 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	제5호 제6호	개인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사업 관련 견적서, 약정서, 계약서 등 제반 문서 (단,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공개) ·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등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항	제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언론·광고매체 관련업무	· 출입기자 개인정보 (매체별 광고비 집행내역 등은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	제6호	개인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공연·전시 등 사업홍보마케팅	· 확정 전 공연·전시 정보 및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호	미확정된 사안의 공개 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각 사업 관련 견적서, 약정서, 계약서 등 제반 문서 (단,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공개) ·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등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항	제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웹진발행	· 운영업체 선정 위원회 구성 등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 (단, 선정 후에는 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공개여부 결정)	제5호 제6호	개인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사업 관련 견적서, 약정서, 계약서 등 제반 문서	제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기관 브랜드 관리	· 확정 전 업무계획 및 추진에 관련한 사항	제5호	미확정된 사안의 공개 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운영업체 선정 관련 위원회 구성 등 개인의 신상 정보에 관한 사항 (단, 선정 후에는 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공개여부 결정)	제5호 제6호	개인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등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항 · 사업 관련 견적서, 약정서, 계약서 등 제반 문서 (단,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공개)	제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및 관리	·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등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항 · 사업 관련 견적서, 약정서, 계약서 등 제반 문서 (단,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공개)	제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실내외 사인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 사업 관련 견적서, 약정서, 계약서 등 제반 문서 (단,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공개)	제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국내외 교류협력	· 교류협력관련 약정체결 등 관련 제반문서 (단,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공개)	제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경영본부	기획조정팀	시의회, 국회, 이사회 및 유관기관 대응	· 시의원 및 국회의원 요구자료 (단, 개별 건마다 검토하여 비공개대상이 아닌 부분은 공개)	제5호 제7호	감사, 의사결정 과정, 인사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 시 회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임원추천위원회	· 회의록 및 결과보고 등	제5호 제6호 제7호	공개 시 공정한 임용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회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기관장 성과계약서	· 기관장 연봉에 관한 사항(기본급, 부가급여 등 일체) (단,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상에서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 * 기본급, 급여성 복리후생비, 제수당, 평가급 공개중	제6호	개인의 민감한 사항 또는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법무, 소송	· 소송 관련 사건 내용 및 관련 문서(소장, 청구서, 답변서,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등)	제4호	공개 시 진행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인사혁신팀	인사위원회 운영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내용 및 관련자 정보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내용 및 관련자 정보	제1호 제5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7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7항
			· 인사평가·징계·포상·승진 등 인사관련 심의·회의록 · 인사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제5호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	제5호 제6호	개인의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채용	·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면접시험 평정표, 답안지, 심사위원, 채용계획, 타 지원자의 성적 등)	제5호 제6호	공개 시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인사제도 제·개정	· 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 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중인 사항	제5호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인사기록 관리	· 개인 인사정보(인사기록카드, 학력 및 경력, 범죄 사실 기록, 인사평가,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등) · 개인 소득정보(급여 및 수당내역 등) · 개인 징계내역 및 각종 심사기록, 감사결과 등 ·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제6호	개인의 민감한 사항 또는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재무회계팀	국세, 지방세, 각종 원천징수의 신고 및 납부	· 소득세, 주민세 등의 원천세 신고 내역	제6호	개인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직영매장 및 임대업체 운영·관리	· 임대 매장별 계약체결 관련 문서, 미납 사용료 내역, 공과금 및 관리비 내역 (단, 계약의 적절한 이행과 관련된 정보로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	제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임대사업 관련 소송 총괄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소장, 청구서, 답변서 · 원고·피고로 진행한 확정된 소송의 사건번호 및 확정된 소송 현황 · 법률자문 및 사실조회 결과 · 소송 대응방침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공사·용역·물품(제작, 수입)과 관련한 계약업무	· 계약체결과정, 결과 관련 문서 등 (단,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공개)	제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시설운영팀	시설 관련 입찰계약 업무	· 설계도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계약자의 개인정보 (단, 입찰공고시 이미 공개된 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	제5호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기술심사위원회(설계업체 선정)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명단, 연락처 및 수당지급내역 (단, 선정 후에는 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	제6호	개인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심의의결을 위한 내부 의견 자료	제5호	공개 시 위원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유지관리 (통신)	· 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신규 통신서비스 제공, 통신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정보, 통신 보안감사에 대한 정보	제7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회관의 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승강기분야 기술 업무	· 세종문화회관의 설비 등 구체적인 내부구조가 포함된 도면	제7호	공개 시 테러 등에 악용되어 관람객의 생명, 신체 보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설계자의 창의적인 노하우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미래전략TF팀	미래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	· 개인별 자문회의 수당(회의비 포함) 및 원고료(전문가, 내부협의체) 지급 내역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계화된 자료는 공개 가능)	제6호	수당 및 용역비 지급내역은 개인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공연예술 본부	공연제작·마케팅팀	공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실적분석	· 각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비롯한 제반 문서 · 각 사업 관련 약정서, 계약서 등 제반 문서 (단,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공개) · 각 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결의서	제7조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 확정 전 업무계획 및 추진에 관련한 사항	제5호	미확정된 사안의 공개 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자문위원회 구성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들어가는 서류	제6호	개인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공연장운영팀	공연장, 부속시설 운영 및 대관업무	· 공연장(부속시설 포함) 대관운영 관련 제반 문서 · 공연장(부속시설 포함) 대관심사 관련 제반 문서 (단, 선정 후에는 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	제5호 제6호	심사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을 유추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공연장안내원 채용	· 공연장안내원 채용 관련 제반 문서	제6호	개인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직원 복무관리	· 개인별 복무관리기록(휴가, 출장, 외부강의 및 교육 등)	제6호	개인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예술단총괄팀	예술단발전방안수립TF 및 후속조치	· 위원회 회의 녹취파일 및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제5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동일· 유사한 위원회 진행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위원회 수당 지급 내역	제6호	수당 지급내역은 개인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예술단 제도개선	· 확정 전 업무계획 및 공약추진 관련 사항	제5호	미확정된 사안의 공개시 시민들 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예술단 단원평가 및 직책단원 선발	· 평가·오디션 점수, 심사위원 명단 및 수당, 결과보고	제5호 제6호	개인별 인사평가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시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은 공개될 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예술단 공연합평회	· 공연 평가서, 평가위원 및 수당, 녹취록, 결과보고	제5호 제6호	공연 평가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을 유추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예술단원 복무관리		· 개인별 복무관리기록(휴가, 출장 등)	제6호	개인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기타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공개될 경우 공정한 복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서울시 뉴딜일자리 연수단원 사업	· 채용 서류 일체 (면접관 점수, 선발 결과보고, 심사위원 명단) 및 급여 등 인사자료 일체	제5호 제6호	채용 및 인사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시 공정한 연수단원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우리동네프로젝트 사업, 청소년예술활성화 사업 운영	· 인력 모집 채용관련 서류 일체(면접관 점수, 선발 결과보고, 심사위원 명단) 및 사례비 등 인사자료 일체 · 활동확인서 및 해촉증명서	제5호 제6호	채용 및 인사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시 공정한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예술단 통합공연, 예술로 동행, 자치단체문화교류, 오픈스테이지 운영	· 출연진/제작진 등 계약 사항(내역, 비용, 기간 등)에 대한 정보 · 자치구, 자치단체, 대관자 등 선정 관련 서류 일체 (단, 제6호 및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의 통계화된 자료는 공개)	제7호	공개될 시 참가자 및 해당 기관,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고객창출팀	고객 민원 대응	· 민원인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 민원 내용(고객의 소리, 서울시응답소, 콜센터)	제6호	개인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홈페이지 개인정보 관리	·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 대관사 법인(개인)정보, 판매사 법인(개인)정보	제6호	개인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일반계약에 관한 사항	· 견적서에 표시된 사업자 정보 및 계약상대자의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은 제6호 및 제7호 적용여부 판단하여 공개여부 결정)	제7호	공개 시 해당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 정보보안 감사에 관한 정보 · 정보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 ·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제7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제7호	관리실태 및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시스템 보안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정보시스템 관리 (전산)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단, 개별 건마다 검토하여 비공개대상이 아닌 부분은 공개)	제1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 통신망 경로(IP대역), 정보시스템 현황자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가 포함된 사항	제7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결과	제7호	기관의 보안 취약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문화사업 본부	예술교육팀	예술교육 사업 운영	· 각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비롯한 제반 문서 · 각 사업 관련 강사, 연주자 등 계약서 제반 문서 · 각 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 결의서 (결과보고서의 경우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 검토)	제7호	공개 시 해당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민감한 정보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 업무계획 및 추진 관련 사항	제5호	미확정된 사안의 공개 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자문위원회 구성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 (단, 자문 종료 후에는 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	제6호	개인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전시팀	직원 복무	· 개인별 복무관리기록(휴가, 출장, 외부강의 및 교육 등)	제6호	개인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세종충무공이야기 안내원 /미술관 및 전시관 도슨트 운영	· 채용과 계약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	제6호	개인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일반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사항(내역, 비용, 기간 등)에 대한 정보 · 견적서에 표시된 사업자 정보 및 계약상대자의 정보 (단,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공개)	제7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전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확정 전 업무계획 관련 사항	제5호	미확정된 사안의 공개 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작품 출품 계약 사항(출품료 등) 및 개인정보	제6호	개인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자문위원 또는 작가선정위원 명단 및 수당, 회의록	제5호 제6호	위원 공개 시 외부 개입으로 공정한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에 관련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미술관 대관 업무	· 대관 심사위원 명단 및 수당 · 위원별 평가점수, 회의록 (단, 심사 종료 후에는 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		
		미술관 운영실적 분석	· 전시별 티켓 판매 실적	제7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문화재원팀	기부·후원 관리 업무 총괄	· 기부·후원자 정보(금액, 이름 등 개인정보)	제6호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액, 기부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꿈의숲 아트센터팀	협력예술단체 및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공연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 및 결과 정보 (결과보고서의 경우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 검토)	제7호	공개 시 해당 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안내원 운영	· 채용에 관한 계약사항 및 개인정보	제6호	개인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일반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사항(내역, 비용, 기간 등)에 대한 정보 · 견적서에 표시된 사업자 정보 및 계약상대자의 정보 (단,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공개)	제6호 제7호	공개 시 해당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및 사업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음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공연사업 계획수립	· 확정 전 업무계획 관련 사항	제5호	미확정된 사안의 공개 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대관에 관한 업무 (수시대관, 긴급공실)	· 대관 가부 결정을 위한 평가 점수, 심사위원 명단 및 결과 (결과보고서의 경우 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 검토)	제5호 제6호	심사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을 유추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